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4. 4 선고 2023가단1153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판희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4. 3. 7.

판 결 선 고 2024. 4. 4.

주 문

1. 피고 B와 소외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. 12. 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 B은 원고에게 10,8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피고 C와 소외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. 12. 8. 체결된 매매계약을 15,6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4. 피고 C은 원고에게 15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5. 피고 D와 소외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. 9.

1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6. 피고 D은 원고에게 21,9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7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① 관이음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23. 2. 8. 주식회사 E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을 채무자로 하여 “2021년 10월까지 채무자에게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,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304,057,381원이다. 채무자가 2021. 11. 8. 액면금액 117,417,682원, 만기 2022. 2. 5.인 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위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데, 위 어음이 2022. 2. 7. 부도처리되었다.”라고 주장하면서 합계 421,475,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(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차전1243호), 위 법원은 2023. 2. 8. 그 지급명령을 하였다. 위 지급명령은 소외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23. 2. 28. 확정되었다.

② 소외 회사는 2021. 12. 6.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같은 날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.

소외 회사는 2021. 12. 8.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

체결하고, 2021. 12. 9.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.

소외 회사는 2021. 9. 16.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같은 날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.

소외 회사는 위 각 매매계약 당시에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.

③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B의 명의이전등록 후인 2022. 7. 19.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, 2022. 12. 22. 자동차가압류등록이 각 마쳐졌다.

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C의 명의이전등록 후인 2022. 12.

21. 자동차가압류등록이 마쳐졌다.

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D의 명의이전등록 후인 2021. 9. 16. F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취득하였고, 2022. 12. 21. 자동차가압류등록이 마쳐졌다.

④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의 가액은 10,800,000원이다.

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의 가액은 57,600,000원인데, 위 매매계약 당시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G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42,000,000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.

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의 가액은 21,900,000원이다.

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① 별지 목록 제1, 3항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위 가액 57,600,000원에서 위 저당권의 채권가액 42,000,000원을 공제한 15,600,000원(= 57,600,000원 - 42,000,000원)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위 15,600,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.

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위 각 자동차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,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① 수익자인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의 가액인 10,800,000원, ② 수익자인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의 가액에서 위 저당권의 채권가액을 공제한 위 15,600,000원, ③ 수익자인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의 가액인 21,9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성을

별지